

# 2023년 재외동포청 일반임기제 4급(정책 기획) 채용 공고

재외동포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영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일반임기제 4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재외동포청장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임용기간
기획 및 정책 보좌	서기관 (일반임기제)	1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외동포청 본청	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구분	직무내용
기획 및 정책 보좌 서기관 (일반임기제)	○ 청내 정책 및 기획 조정 - 주요 업무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 - 정책 현안 대응 및 대외협력 등 ○ 청장 정책보좌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4. 응시자격 요건

### □ 공통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10.19.) 기준]

구 분	종류	채용 자격 요건
자격요건	경력 (①~③ 中 택1)	①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③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요건 응시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p>■ 관련 분야 경력 : ▲기관 정책 및 기획 ▲기관장 정책 보좌 ▲재외동포·국제교류협력 또는 외교 관련 분야 근무 경력</p> <p>※ 강의경력 제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p> <p>■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 계산은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의 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p>		

○ 응시자격 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등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법인(기업체,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붙임] 직무 기술서 참조)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관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 ▲부서, 직위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 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발급기관명 및 직인, 발급확인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명시

-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 시간제 근무 :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관련분야 경력에 휴직기간, 연수 및 수습기간, 인턴기간, 현장조사, 단순 업무보조, 학위취득 과정, 대학 조교 경력 및 연구 경력은 불인정

□ **우대 요건 및 가산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및 가산점	
<p><b>기획 및 정책 보좌</b> 서기관 (일반임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b>관련분야 근무경력</b>(기간별 차등 배점)</li> <li>○ <b>관련분야 관련 표창·상훈이 1건 이상인 자</b>(건별 차등배점, 단체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단체수상 제외)된 표창(상훈)에 한정</li> </ul> </li> <li>○ <b>영어성적이 우수한 자</b>(일정 점수 이상 시 일괄 배점)</li> <li>○ <b>변호사 자격증 소지자</b></li> <li>○ <b>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b>(등급별 가산점 부여)</li> </ul>

○ 우대요건 및 가산점 기본사항

-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을 제외함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표창·상훈의 의미

-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기관장(장·차관급 이상),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것에 한정(단체 제외)하여 건별 차등 우대함

※ 개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영어성적의 의미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이상인 자 우대(중복 시 1개만 인정)

구분	텡스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플렉스 (FLEX)
			(PBT)	(CBT)	(IBT)	
점수	340점이상	700점이상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625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유효기간 경과시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음.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유의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변호사 자격증의 의미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제출 (사연 기수, 변호사시험 합격연도 및 회차 보이게 제출)

##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

· 서기관(일반임기제) : 하한액 63,430천 원

○ 임기제의 경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6. 시험 방법

###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채 점 기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분야 근무경력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우 대 사 항 (우대 요건 참고)	관련분야 근무경력, 상훈(표창) 경력, 변호사 자격증, 영어능력 등
가 산 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 여부

###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불합격기준 : 위원 1인당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1인당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할 때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3. 9. 25.(월) ~ 10. 5.(목)	'23. 9. 25.(월) ~ 10. 5.(목)	'23. 10. 13.(금)	'23. 10. 18.(수) ~ 10. 19.(목)	'23. 10. 31.(화)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재외동포청 홈페이지(<http://oka.go.kr>)에 게재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http://oka.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 응시원서 접수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접수기간 : '23. 9. 25.(월) ~ 10. 5.(목) 18:00 (마감일 소인분 기준)

#### ○ 접수방법

■ 접 수 처 :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032-585-3115)

(우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층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

- 방문접수는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응시번호는 10.5.(목) 문자 개별 통보, 통보받지 못한 경우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032-585-3115)”로 반드시 확인(응시번호 미교부·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구분	내용	서식
공통사항 (필수 제출)	1.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2.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1만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a href="http://www.e-revenuestamp.or.kr">www.e-revenuestamp.or.kr</a> ) 등 통해 발급 ※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3. 이력서 1부	○ 작성요령 반드시 준수	별지 제3호
	4. 자기소개서 1부	○ 작성요령 반드시 준수 ※ A4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작성요령 반드시 준수 ※ A4 3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
	6. 경력증명서 등 사본 1부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 및 담당 업무, 근무형태(상근,시간제,프리랜서) 정확히 기재 ※ 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가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 첨부(근로 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등) - 폐업회사는 안내사항 반드시 참조 -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 담당자 연락처 및 e-mail 반드시 기재	프리랜서 폐업회사 등은 별도 증빙 필요
	7. 졸업증명서 (학위증)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제공하지 않음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 제6호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0.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제출
11. 표창(상훈) 증빙 사본 1부		○ 우대요건 관련 해당 시 제출	-
12. 어학성적 증빙 사본 1부		○ 우대요건 관련 해당 시 제출	
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가산점 관련 해당 시 제출	
14.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도 가능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 번역본을 함께 첨부

## < 폐업회사 경력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민원증명' (Fact Certificate), '신청/제출' (Apply/Submit), and '소득/납부' (Income/Payment). The '민원증명' section is expanded, showing '민원증명 신청' (Apply for Fact Certificate) with a red circle around the '소득내역증명' (Income Statement) option. Below this, the '민원증명 신청' (Apply for Fact Certificate) section is visible, listing various services and their application procedures. The '소득내역증명' (Income Statement) option is circled in red, indicating the correct path for applying for a fact certificate for a closed company.

##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의거,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비위 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최종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제74조(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032-585-3115)**

# 붙임

## 일반임기제 4급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청 내 정책 및 기획 조정, 청장 정책 보좌	서기관 (일반임기제)	1명	재외동포청(인천 연수)

<b>주요업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 내 정책 및 기획 조정 - 재외동포청 주요 업무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li> <li>○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 및 재외동포 지원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청장 보좌</li> <li>○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 소통 및 의견수렴</li> <li>○ 정책 현안 대응 및 국회·언론 등 대외협력 등</li> <li>○ 그밖에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li> </ul>
-------------	---

<b>필요역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통)</b>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li> <li>○ <b>(직급별)</b> 기획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성과창출 능력,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등 대외협상능력</li> </ul>
-------------	--

<b>필요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국제교류 협력 또는 외교 정책 관련 전문지식</li> <li>○ 정책보좌 또는 정책 기획·총괄 역량</li> <li>○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정 및 통합력 등 해결방안 관련 지식</li> </ul>
-------------	--

<b>자격요건</b>	<b>경력 (①~③ 중 택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li> <li>②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li> <li>③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li> </ul> <p>※ 경력요건 응시자의 경우에 한하여 <b>최종경력을 기준으로</b>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b>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b>(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p> <p><b>[관련분야 경력]</b> ▲기관장 정책보좌 또는 ▲기관 정책 및 기획 또는 ▲재외동포·국제교류협력 또는 외교 관련 분야 근무 경력</p> <p>※ 강의경력 제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p>
<b>우대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배점)</li> <li>○ 관련분야 관련 표창·상훈이 1건 이상인 자(건별 차등배점, 단체 제외)</li> <li>*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단체수상 제외)된 표창(상훈)에 한정</li> <li>○ 영어성적이 우수한 자(일정 점수 이상 시 일괄 배점)</li> <li>○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li> </ul>
<b>가산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등급별 가산점 부여)</li> </ul>

<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응시직급
	재외동포청	청 내 정책 및 기획 조정, 청장 정책 보좌,	4급

▣ 작성목록(총괄표)

구분	목 록	제출여부
필수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2. 응시원서 (정부수입인지 부착)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3. 이력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4. 자기소개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5. 직무수행계획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6.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한 경력자는 초과경력 모두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7. 학위증명서(제척·기피사유 확인용) * 학·석·박사 모두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9.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해당자 제출	10. 주민등록초본(남성만 병역사항 기재하여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1.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2. 어학성적 증빙자료 사본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4. 변호사 자격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집계를 사용하여 편철(스테이플러, 견출지 사용금지)

2023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서식 제2호>

# 응시원서

본인은 일반임기제 4급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재외동포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국적명 )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격 요건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력①	<input type="checkbox"/> 경력②	<input type="checkbox"/> 경력③		
주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				

응시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위	
성명	(한글)	(한자)		
2023년 월 일 재외동포청장 Ⓜ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일반임기제 4급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 청 내 정책 및 기획 조정, 청장 정책 보좌)

3. 응시요건 : 공고문의 “응시자격”을 참고하여 응시요건 중 **반드시 택일**하여 표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경력 요건(공무원경력, 민간경력) 착오, 미 선택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직급(분야) : 일반임기제 4급(청 내 정책 및 기획 조정, 청장 정책 보좌)
- ③ 응시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자격 요건 중 **반드시 택1**하여 기재
- ④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경력】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에는 업무 및 근무기간, 발급자 연락처(전화번호, e-mail / 진위여부 확인용)가 명시되어야 함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학교명 기입 금지)

### 【표창(상훈)】

√ 표창(상훈)명 : 정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상장)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 이력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작성자 확인란만 자필로 작성합니다.

자 기 소 개 서

응시직급 (분야) : 일반임기제 4급(정책 및 기획 조정, 청장 정책 보좌)

성 명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 . 작 성 자 : (인/서명)

※ 14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분량은 A4용지 2쪽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